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523호 2021년 4월 1일(목)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73호) ····· 7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74호) ····· 14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75호) ····· 18

○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76호) ····· 20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77호) ····· 23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78호) ····· 25

○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79호) ····· 30

○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80호) ····· 35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81호) ····· 38

○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82호) ····· 44

○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83호) ····· 48

○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84호) ····· 52

○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85호) ····· 58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486호) ····· 59

■ 규 칙

○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70호) ····· 63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71호) ····· 66

■ 훈 령

○ 경상북도청 이전기획단운영세칙 폐지령
(경상북도 훈령 제1585호) ····· 68

■ 고 시

○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01호) ····· 70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02호) ····· 75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03호) ····· 78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04호) ····· 82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지형도면(변경)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05호) ····· 88

○ 도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06호) ····· 90

○ 2021년도 제1차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07호) ····· 97

■ 공 고

○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742호) ····· 103

○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743호) ····· 107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1-71호) ····· 121

○ 영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1-36호) ····· 129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21-23호) ····· 131

■ 공 고

○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경산시 공고 제2021-620호) ····· 139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138호) ····· 142

◈◈◈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73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용역·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정적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2. 경상북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
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보조하는 연구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촉진 및 우선구매 예외)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없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북도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구매계획 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 평가 및 공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판로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외진출 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

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74호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사관계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사간 갈등관리 및 상생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2. 노사간 협력 관계 유지 및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3.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사업
4.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
5.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7.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2. 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노동단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제7조(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 선정) ①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75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평가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의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76호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4.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 지원
2.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
3.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
4.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보,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77호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제5조 제2항에 따라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
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시행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78호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미시 박정희로 155(상모동) 일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테마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마공원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2. 새마을운동 관련 전시·홍보·체험·교육연수
3. 새마을운동의 진흥 및 새마을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전시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전시관 휴관)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관람료 등) 테마공원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주차료 포함)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기, 흉기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주류, 취사도구를 소지한 사람
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동반입장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전시관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7. 그 밖에 전시물품의 보존,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및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 및 관람 제한에 관한 안내표지를 전시관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테마공원 내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란 등 관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음주 및 음식물 섭취행위,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행위
3. 취사 및 쓰레기 투기행위
4. 상업 또는 광고행위, 낙서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공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7. 수목에 대해 약품투여, 절제 등 손상을 주는 행위
8.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9.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공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에 관한 안내표지를 공원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 도지사는 관람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커피판매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시설 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진흥과 새마을 세계화와 관련한 사업

2. 교육 및 문화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테마공원 내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table>
<tr><th colspan="7">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 사용신청서</th></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
(단체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사무실
(자택)</td><td></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td></tr>
<tr><td colspan="2">행사의 명칭
(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 용 기 간</td><td colspan="5">년 월 일(요일) 부터
년 월 일(요일) 까지</td></tr>
<tr><td colspan="2">사 용 시 설</td><td colspan="5">위 치 :
시설명 :
면 적 :</td></tr>
<tr><td colspan="2">사 용 인 원</td><td colspan="5">명</td></tr>
<tr><td colspan="2">특 기 사 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5">첨부 1. 행사계획서 1 부
2. 기타 필요한 서류</td></tr>
</table>

위와 같이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79호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나. 공무직 근로자

다. 도 본청, 소속기관(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청원경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적용대상기관”이란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출자·출연 기관”이란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5. “청렴해피콜”이란 도지사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민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공직자 및 적용대상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 ① 도지사는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에 포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의 평가 등급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급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해피콜) ① 도지사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처리) ① 청렴해피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등 측정
2. 도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청렴포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80호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의 서예교육 기회 확대와 서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 등과 협력하여 도민의 서예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서예 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문화와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4. 서예 전시회 및 홍보 · 마케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 법인 ·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81호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 및 농업인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직접 농작물등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야생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 광견병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은 제외한다.
7.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예방활동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6조(피해 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7조(피해 예방시설 지원 기준) 피해 예방시설의 지원은 제4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8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등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① 농작물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를 산정한 연간 총 피해금액의 50%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인명피해 보상대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인명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에 의한 경우

제13조(인명피해액 산정) 인명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인명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비 : 최대 100만원까지

2. 사망위로금 : 최대 500만원까지

3.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인명피해 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피해방지단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포상금 : 멧돼지 50,000원, 고라니 50,000원, 청설모 7,000원, 조류 5,000원 (마리당)

2. 수렵보험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82호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사회적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회적농업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 ·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및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83호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현황 및 보전실태
2. 농어업유산 관리·보전·활용 방안
3. 농어업유산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4. 다른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농어업유산 관리·보전·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농어업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어업유산의 지정 절차,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지정 또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3. 농어업유산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의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
2. 농어업유산의 교육 및 자원화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위한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84호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농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4. 농작물 경영진단·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진단·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연구는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국가, 기관,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하고,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농촌지도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가.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및 농촌자원 소득화
   나. 농촌관광 및 치유농업 육성
   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승계 농업인 육성
   라.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
   마. 농작업환경개선 등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4.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5.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6. 첨단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7.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마케팅

9. 지역특성 및 현장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 보급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 · 귀촌한 사람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

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 기술적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4. 농업연구, 교육,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5.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보급

2.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업 ·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 · 학계 · 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85호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4486호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지역의료원”이란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 ·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 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규칙 제2970호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을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소속 직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

된 변호사법률자문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문변호사가 자문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자문의 신청 및 결과 통보를 별도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자문의 내용·중요도 등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문을 실시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 **자문결과 평가 [부서장]**

□ **기본 사항**

고문 변호사	
부 서 명 : 자 문 일 : 자문사항 :	

□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3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① 매우 그렇다(30) ② 그렇다(25) ③ 보통이다(20) ④ 그렇지 않다(15) ⑤ 매우 그렇지 않다(10)	
2. 자문의 유용성(1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10) ② 그렇다(8) ③ 보통이다(6) ④ 그렇지 않다(4) ⑤ 매우 그렇지 않다(2)	
3. 자문의 적시성(1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10) ② 그렇다(8) ③ 보통이다(6) ④ 그렇지 않다(4) ⑤ 매우 그렇지 않다(2)	

□ **건의[개선] 사항**

. .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 **난이도 평가 [법무혁신담당관]**

평 가 항 목	점 수
o 자문의 난이도(50점) ① 매우 높다(50) ② 높다(45) ③ 보통이다(40) ④ 낮다(35) ⑤ 매우 낮다(30)	

. . .

법무혁신담당관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규칙 제2971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료)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이동상담은 시간당 5만원,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건당 2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이 이동상담으로 출장하는 경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료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상담을 실시한 분부터 적용한다.

◈◈◈

경상북도청이전기획단운영세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4월 1일

경상북도 훈령 제1585호

경상북도청이전기획단운영세칙 폐지령

경상북도청이전기획단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01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0년 사방사업시행계획 변경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 054-420-8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서

소 재 지				지목	지적 (㎡)	지정 고시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사업 종류	
계			19필지			2,071				
김천계			10			539				
김천	감천	도평	산19-8	임	14,598	376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97, 110동 404호(남부동, 양산신도시쌍용아파트)	구영덕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산2길 24	구영호		
김천	감천	도평	359-1	전	1,277	27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474-5	구도엽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김천	증산	평촌	산60	임	6,056,214	29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대한불교조계종 청암사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김천	조마	대방	산129-1	임	58,738	28	대구시 북구 관음동 1358-1	박성기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434	박창기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335-7	박환기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143-8	박상기		
							수원시 권선구	박달기		

소 재 지				지목	지적 (㎡)	지정 고시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사업 종류	
							권선동 1186 삼천리권선 1차아파트 101-206			
김천	구성	하강	산69	임	23,119	22	경북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870	김옥이	산사태 복구	사업 계획 변경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청로45, 301동 1202호 (일산동, 일산3차 현대홈타운)	최종규		
김천	봉산	신암	산174	임	10,154	6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5길 7, 104동 206호 (구평동, 부영아파트)	김찬수	계류보전	사업 계획 변경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신암4길 20-57	김춘수		
							경상북도 김천시 가메실2길 51, 1동 1102호(부곡동, 금류아파트)	김연수		
김천	봉산	신암	산185	구	3,151	10		국(건설부)	계류보전	사업 계획 변경
김천	봉산	신암	540	답	3,724	7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482	노하균	계류보전	사업 계획 변경

소 재 지				지목	지적 (㎡)	지정 고시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사업 종류	
김천	조마	신왕	산175	구	470,023	33		국(건설부)	산지보전	사업계획변경
김천	조마	신왕	20	전	683	1	미등기	김용민	산지보전	사업계획변경
고령계			1			1,208				
고령	쌍림	신곡	산35	임	47,469	1,208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산35	주식회사 대경레미콘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성주계			5			86				
성주	금수	어은	산76	임	31,912	10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564-34 영래하이츠빌라 에이-102	안동권씨복야공파영주종중 대표자 권성오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성주	금수	어은	산74	임	44,389	2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665	신동권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성주	금수	광산	1134	천	42,158	17		국(건설부)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성주	용암	중거	719	임	1,695	7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38, 101동 206동(용산동, 용산2차우방타운)	전병준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소 재 지				지목	지적 (㎡)	지정 고시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사업 종류	
성주	용암	중거	산76	임	15,904	30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564-34 영래하이츠빌라 에이-102	안동권씨 복야공파 영주종중 대표자권 성오	산사태 복구	사업 계획 변경
칠곡 계			3			238				
칠곡	가산	가산	산113-3	임	6,911	198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42길	이무재	산지사방	사업 계획 변경
							대구시 북구 침산동 117-3 침산1차화성타운 106-1202	이신재		
							대구시 북구 침산동 15-70	이철재		
칠곡	가산	가산	251	답	2,691	14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242	대한불교 조계종대 둔사	산지사방	사업 계획 변경
칠곡	왜관	아곡	산70	임야	19,473	26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47-2	대한예수 교장로회 왜관교회	산지보전	사업 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0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2020년 사방사업 계획 변경 시행

3.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 054-420-8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내역서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사업종류	해제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지정년월일(고시번호)			
합계			17필지			6,745	980	5,765				
김천계			9			1,918	526	1,392				
김천	감천	도평	산19-8	임	14,598	838	101	737	2020-07-30(246호)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김천	감천	도평	산19-9	임	2,631	54	1	53	2020-07-30(246호)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김천	증산	평촌	산60	임	6,056,214	28	7	21	2020-07-30(246호)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김천	조마	대방	산129-1	임	58,738	292	281	11	2020-07-30(246호)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김천	조마	대방	307	과	9,680	16	15	1	2020-07-30(246호)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김천	봉산	신암	산173	임	26,687	23	1	22	2020-03-09(86호)	계류보전	사업계획변경	
김천	봉산	신암	산174	임	10,154	206	55	151	2020-03-09(86호)	계류보전	사업계획변경	
김천	봉산	신암	산185	구	3,151	440	62	378	2020-03-09(86호)	계류보전	사업계획변경	
김천	봉산	신암	963	전	318	21	3	18	2020-03-09(86호)	계류보전	사업계획변경	
고령계			2			3,401	107	3,294				
고령	쌍림	신곡	산35	임	47,469	3,352	58	3,294	2020-07-30(246호)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및 지정해제 현황				사업종류	해제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고령	쌍림	신곡	545	장	11,920	49	49	-	2020-07-30(246호)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성주계			4			549	139	410				
성주	금수	어은	산76	임	31,912	37	6	31	2020-12-21(463호)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성주	대가	옥화	산2	임	76,394	148	88	60	2020-12-21(463호)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성주	용암	중거	719	임	1,695	5	5	-	2020-12-21(463호)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성주	용암	중거	산76	임	15,904	359	40	319	2020-12-21(463호)	산사태복구	사업계획변경	
칠곡계			2			877	208	669				
칠곡	가산	가산	산113-3	임	6,911	811	165	646	2020-07-30(246호)	산지사방	사업계획변경	
칠곡	왜관	아곡	산70	임	19,473	66	43	23	2020-12-21(463호)	계류보전	사업계획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송하도로 선형개량사업』를 위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시군	구분	합계				기능	연장 (k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영양	기정	소로	1	지917	9.5	지방도 (주간선 도로)	152.5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일반 도로	-	경상북도고시 제2003-63호 (2003.2.20)	

시군	구분	합계				기능	연장 (k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소로	1	지917	9.5	지방도 (주간선 도로)	152.5 (152.2)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111-4)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산74-1)	일반 도로	-		

2. 접도구역의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917호선	노선명	화매~덕신
접도구역 또는 위치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 양측으로 5m ▫ 시점 : 수비면 송하리 111-4 ▫ 종점 : 수비면 송하리 산74-1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지방도 917호선	지방도 917호선	○ L=152.5km→L=152.2km(0.36km) ○ 일부구간 선형개량에 따른 변경 – 폭원 : B=9.5m – 연장 : L=0.36km	○ 지방도 917호선 구간내 소재지의 도로를 선형개량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

4. 사업시행기간

○ 송하도로 선형개량사업 : 2021. 03. ~ 2021.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수비	송하	111-8	임	252	252		경상북도	
2	"	"	111-7	임	230	230		경상북도	
3	"	"	107-1	답	174	174		경상북도	
4	"	"	108-3	답	95	95	영양읍 동부동 512	김덕재	
5	"	"	108-1	답	162	162	영양읍 동부동 512	김원재	
6	"	"	107-2	답	354	354		경상북도	
7	"	"	602	도	89	23		국(국토부)	
8	"	"	605	구	2,628	114		국(농림부)	
9	"	"	99-20	전	21	21		국(산림청)	
10	"	"	99-6	전	870	39	수비면 낙동정맥로 1102-12	천희봉	
11	"	"	99-21	전	11	11		국(산림청)	
12	"	"	99-24	전	257	257	수비면 낙동정맥로 1102-12	천희봉	
13	"	"	99-19	전	103	103		국(산림청)	
14	"	"	96-6	대	31	31		국(산림청)	
15	"	"	99-22	전	127	127		국(산림청)	
16	"	"	99-18	전	714	714	대구 서구 평리동 707-11	김재수	
17	"	"	산75-2	임	6	6	수비면 송하리 111	천성우 외 1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8	"	"	99-23	전	36	36		국(산림청)	
19	"	"	산75-3	임	249	249		국(산림청)	
20	"	"	99-11	전	133	133		국(산림청)	
21	"	"	99-17	전	354	354	대구 달서구 월배로5길 76, 202동 804호	천희국	
22	"	"	산74-7	임	108	108		경상북도	
23	"	"	91-2	전	276	276		경상북도	
24	"	"	91-1	전	112	112		국(산림청)	
25	"	"	산74-3	임	2,583	2,583		국(산림청)	
26	"	"	산74-5	임	164	164		경상북도	
27	"	"	산74-6	임	368	368		경상북도	
28	"	"	산76-5	임	157	157		국(산림청)	

6.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 : 열람장소에 비치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054-850-3245)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3)

※ 첨부서류 : 1천분의 1 지형도(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열람이 가능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장대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연장 (총연장) (㎞)
기정	지방도	927호선	구미-단양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일원	5,891㎡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5-3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4-2	-	0.262km (143.3km)
변경	지방도	927호선	구미-단양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일원	8,018㎡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5-3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4-2	-	0.255km (143.3km)
기정	지방도	912호선	청리-현서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일원	5,891㎡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5-3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4-2	-	0.262km (107.4km)
변경	지방도	912호선	청리-현서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일원	8,018㎡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5-3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4-2	-	0.255km (107.4km)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합 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10.0	주간선도로	30,811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산2-2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산28-3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09-120호 (2009-3-2)	
변경	소로	1	13	10.0	주간선도로	30,804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산2-2	의성군 신평면 청운리 산28-3	일반도로	-		

3. 접도구역의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927호선	노선명	구미-단양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 양측으로 5.0m ◎ 접도구역 범위 (L=0.255 ㎞) - 시점 :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5-3번지 - 종점 :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4-2번지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지방도 912호선과 중복구간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912호선	노선명	청리-현서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 양측으로 5.0m ◎ 접도구역 범위 (L=0.255 ㎞) - 시점 :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5-3번지 - 종점 :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4-2번지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지방도 927호선과 중복구간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사유

○ 『장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변경)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5-3	전	1,975	1,975	경상북도					
2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81-1	답	13	13	경상북도					
3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4-1	답	70	70	경상북도					
4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1-4	답	365	365	경상북도					
5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1-3	답	30	30	의성군					
6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1-5	답	53	53	경상북도					
7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5-2	전	144	144	의성군					
8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산83-1	임	798	798	의성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70-1	답	195	195	경상북도					
10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9-1	답	49	49	경상북도					
11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7-1	답	7	7	경상북도					
12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산83-2	임	1,210	1,210	경상북도					
13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산85-3	임	829	829	경상북도					
14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산85-4	임	88	88	경상북도					
15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산85-1	임	72	72	김홍제	478				
16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산85-2	임	289	289	경상북도					
17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4-1	답	212	212	경상북도					
18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5-1	전	1,600	1,600	경상북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64-2	답	19	19	경상북도					

7.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 : 열람장소에 비치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054-850-3245)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3)

※ 첨부서류 : 1천분의 1 지형도(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열람이 가능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105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지형도면(변경)등 고시

지방하천(남천)에 대해「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가. 하천구역 결정(변경)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 천 구 간(변경없음)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당초	변경	
남천	지방하천	경북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790번지선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1100-1번지선 위천(지방) 합류점	19.96	2,384,985	2,384,842 (감 143)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 남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구간 : No.9+000 ~ No.9+200

○ 토지세목 조서

번호	하천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동	리				당초	변경	성명
계					4필지			2,333	2,190	(▽143)
1	남천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1447-92	전	111	111	-	국(재무부)
2	남천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1447-93	임	19	19	-	국(재무부)
3	남천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1447-95	제	486	486	477	국(건설부)
4	남천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1404-50	제	1,717	1,717	1,713	국(건설부)

나. 남천 폐천부지등의 고시

번호	하천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폐천면적(㎡)	보전 ·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폐천발생 사유
		시.군	읍.면.동	리					
계					4필지		143		
1	남천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1447-92	전	111	처분	하천구역 부분변경
2	남천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1447-93	임	19	처분	하천구역 부분변경
3	남천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1447-95	제	9	처분	하천구역 부분변경
4	남천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1404-50	제	4	처분	하천구역 부분변경

다.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변경)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는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군위군(안전관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열람장소 비치)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06 호

도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문화유산에 대하여 경상북도 문화재(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같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보에 고시합니다.(본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를 포함한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문화재 지정현황

1) 지정현황

○ **봉화 춘우재(奉化 春雨齋)**

- 종 별 : 민속문화재
-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가평리 188
- 건립년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창녕성씨부용당문중

- 수 량 : 건물 2棟

2) 지정별 세부내역

명 칭	재료	구조·형식·형태	규격	수량	기타 특징
봉화 춘우재 (奉化 春雨齋)					
① 춘우재	목조	목조/5량가/팔작지붕	정면4칸, 측면2칸 /102㎡	1棟	
② 부용당 사당	목조	목조/3량가/맞배지붕	정면3칸, 측면1.5칸 /51㎡	1棟	

3) 문화재 지정구역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	문화재 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계	1 필지	1,203	153	1,050			
경상북도 봉화군 가평리 188	대	1,203	153	1,050	창녕성씨 부용당문중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계서당길 6-28	

4) 지정사유

○ **봉화 춘우재(奉化 春雨齋)**

봉화 춘우재는 임진왜란 때 창의해 활약했던 한강 정구의 문인인 부용당 성안의가 영주에서 1613년 봉화로 이거하여 지은 재택 중 가숙(누정, 정자 등) 곁에 1799년 후손인 그를 추모해 지은 불천위 별묘와 재실이다. 재실 앞에는 후대 ㄷ자형 주사를 증축해 제향의 부속공간으로 사용했다.

ㅡ자형 재사와 ㄷ자형 주사가 전체적으로 튼ㅁ자형을 이룬 예는 많지 않은데, 별묘

와 함께 일곽을 이룬 예는 예천 대지재사(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73호)가 유일하다.

춘우재와 불천위 사당은 인근의 부용당 성안의의 셋째아들인 성의성의 종택과 불천위 사당이 있다. 두 불천위 사당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으므로 별묘를 후대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부용당 성안의가 후학을 가르치던 가숙을 재실로 전용하면서 대청 앞 난간을 철거하고 내부 보수 등 변화가 있었으나, 구조형태는 건립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조선후기 지역의 대표적 인물인 성안의가 퇴계학파의 일원으로 임란당시 많은 공을 세운 의병장이었다는 점, 조선후기 불천위 사당 또는 별묘의 건립 경위와 가숙이 재사로 변용된 변화양상과 구조를 밝힐 주요 자료이며, 매년 춘향사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역사적·건축적 측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

5) **지정일자** : 도보 고시일

6) **지정도면** : [붙임1] 참조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2] 참조

3. 참고사항 : 지형도면 등(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함)

「봉화 춘우재」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 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4-880-3168),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054-679-633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도지정문화재 지정도면 1부.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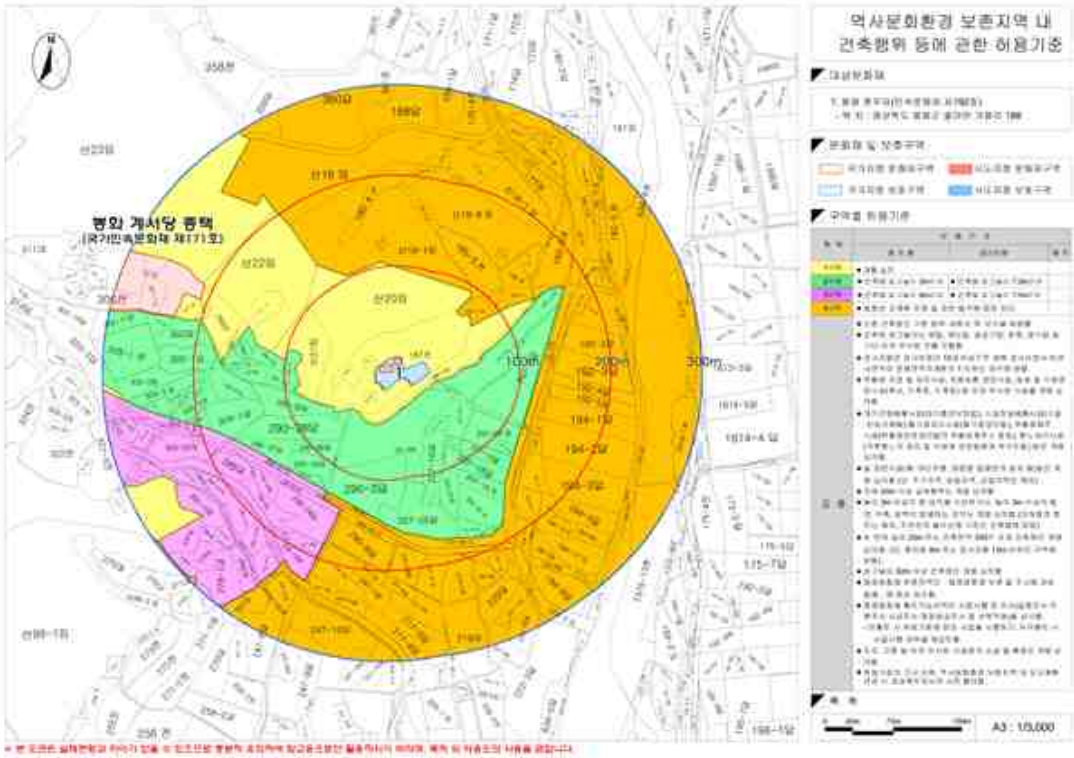
[붙임1] 도지정문화재 지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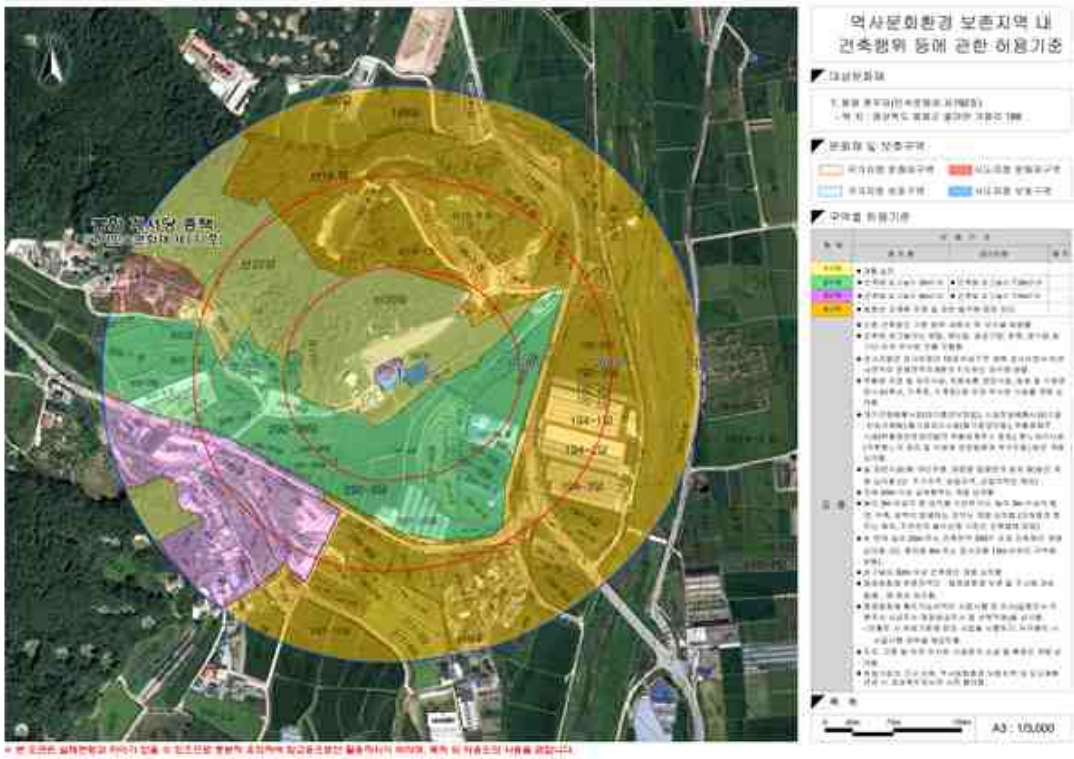


[붙임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등에 관한 허용기준

민속문화재 제192호 봉화 춘우재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빛 관련시설(예: 야간조명, 태양광 집열판의 설치 등)등은 개별 심의함.(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경화 계서당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100m
200m
300m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3 : 1/5,00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3 : 1/5,000

경상북도고시 제2021- 107호

2021년도 제1차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제1차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사 업 명 : 2021년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1차분)

2. 사업지구 : 17개 시·군 39개 지구 13,315필지 7,375,568㎡

시·군	시행자	지 구 명	필지수	면 적 (㎡)	소유자 총 수	소유자 동 의 (%)	면 적 동 의 (%)
합계	17개	39개	13,315	7,375,568	-	-	-
경주시	경주시장	외동 입실1지구	921	187,476	309	68.3	92.0
		건천 천포2지구	564	251,693	145	71.0	84.0
		외동 개곡2지구	345	196,696	137	76.6	90.0
김천시	김천시장	감문남곡지구	161	57,169	101	97.0	95.1
		어모남산1지구	239	113,064	133	69.9	72.8
		어모남산2지구	137	46,828	84	80.9	80.4
		대항복전지구	585	152,929	209	70.3	71.2
안동시	안동시장	풍산읍 마애지구	439	436,364	179	67.0	79.1
구미시	구미시장	도량1지구	416	65,437	218	71.6	72.7
		선산봉곡1지구	253	149,543	117	76.1	80.0
		괴곡1지구	272	376,841	136	70.6	79.0
영주시	영주시장	노좌지구	586	506,538	174	67.8	78.1
		창락지구	410	214,785	133	66.9	82.2
		영주4지구	470	72,969	234	67.1	69.8
		막현지구	143	110,742	59	71.2	78.2
		읍내2지구	177	260,909	84	70.2	77.5
영천시	영천시장	왕산지구	501	119,968	251	67.3	72.2
		창하지구	87	52,945	26	84.6	92.3
상주시	상주시장	개운지구	144	90,084	91	70.3	77.0
		이소지구	752	425,848	370	70.0	70.0
문경시	문경시장	전두지구	693	981,168	182	67.6	72.2

시·군	시행자	지 구 명	필지수	면 적 (㎡)	소유자 총 수	소유자 동 의 (%)	면 적 동 의 (%)
군위군	군위군수	운산지구	277	138,963	122	78.7	84.0
의성군	의성군수	구천면 소호2지구	352	478,722	83	72.3	69.5
		의성읍 후죽3지구	467	144,076	70	67.1	75.2
청송군	청송군수	청운2지구	243	114,506	89	83.1	77.2
		청운3지구	297	105,810	137	80.3	83.6
		청운4지구	300	243,615	65	78.5	82.5
영양군	영양군수	주역지구	102	80,005	43	76.7	80.6
영덕군	영덕군수	318만세2지구	557	121,085	283	70.7	69.2
		318만세4지구	138	32,918	81	74.1	69.0
청도군	청도군수	흥선지구	758	424,233	246	74.0	77.8
고령군	고령군수	사부지구	175	81,615	79	86.1	90.1
칠곡군	칠곡군수	구덕1지구	116	69,206	67	76.1	66.8
		금암1지구	285	66,593	115	70.4	79.1
		금암2지구	177	33,991	86	73.3	83.5
		남계1지구	443	102,593	203	69.0	70.5
		남계2지구	87	22,257	48	72.9	80.7
		왜관9지구	101	24,281	39	69.2	84.0
봉화군	봉화군수	동면1지구	145	221,103	48	77.0	74.2

3.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4. 고 시 일 : 2021. 4. 1.

5. 관련서류 : 경상북도청 및 지적소관청 비치

-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 (054)-880-4055
- 경 주 시 토지정보과 ☏ (054)-779-6977
- 김 천 시 열린민원실 ☏ (054)-420-6388
- 안 동 시 토지정보과 ☏ (054)-840-5069
- 구 미 시 토지정보과 ☏ (054)-480-6378
- 영 주 시 토지정보과 ☏ (054)-639-5932
- 영 천 시 지적정보과 ☏ (054)-330-6382
- 상 주 시 민원토지과 ☏ (054)-537-7792
- 문 경 시 종합민원과 ☏ (054)-550-6788
- 군 위 군 민원봉사과 ☏ (054)-380-6949
- 의 성 군 민원과 ☏ (054)-830-6367
- 청 송 군 종합민원과 ☏ (054)-870-6398
- 영 양 군 종합민원과 ☏ (054)-680-6802
- 영 덕 군 종합민원처리과 ☏ (054)-730-6426
- 청 도 군 민원과 ☏ (054)-370-6397
- 고 령 군 민원과 ☏ (054)-950-6395
- 성 주 군 민원봉사과 ☏ (054)-930-6382
- 칠 곡 군 민원봉사과 ☏ (054)-979-6302

- 봉 화 군 종합민원과 ☏ (054)-679-6163

6.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2021 - 742호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액계약건의 자체계약 범위 확대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집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 재무관의 업무범위 조정

1. 종합 · 전문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 ·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전 화 : Tel) 054-880-2953, Fax) 054-880-2929
- 이메일 : az8985@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전문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 ·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기타관서에 대한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 입찰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전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 · 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기타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경상북도 공고 제2021 - 743호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물품 대부료의 산정 등 관련 법 적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물품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물품의 대부 조항 신설

나. 불용결정의 위임처리 범위 조정 등 미비사항 정비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전 화 : Tel) 054-880-2953, Fax) 054-880-2929
- 이메일 : az8985@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 사업소”를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 사업소”를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로, “직속기관 · 사업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물품의 대부)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부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지원국장,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2. 물품관리관: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④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지원국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주무국장: 단가 2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라. 회계주무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 결정된 사항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제14조의2제4항 관련)

1. 물품의 평가액

○ 물품평가액 = $\frac{\text{취득단가}}{\text{내용연수}} \times$사용연한

○ 사용연한 = 내용연수-사용연수

※ 대부하려는 물품의 사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물품 평가액은 해당물품의 취득단가를 적용하고, 사용연수가 내용연수와 같거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연한을 1로 한다.

2. 대부료

○ 대부료 = $(\text{물품평가액} \times 6\%) \times \frac{\text{대부일수}}{365}$

※ 대부료 최종 산정 후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별지 제23호서식]

물품 대부신청서

○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표시

구입 일련 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원)	대부목적

○ 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물품 대부계약서

○ 물품의 표시

구입 일련 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원)

위 물품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대부자’)와 ○○○(이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품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제3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자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다.

제5조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품의 보존책임과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대부물품에 대해서는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물품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물품의 원상을 변형, 훼손하는 행위

제7조 계약자가 대부물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상을 변형,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계약자에 대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계약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 중 과납금은 반환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의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대부자가 지

정하는 기한 안에 대부물품을 원상으로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물품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형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물품 대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계약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자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민법」등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제14조 계약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대부자 경상북도지사 ○○○ (인)

계약자 (인)

비고: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기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생 략) 2. 소방본부, 직속기관·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가. ~ 라.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소방본부, 직속기관·사업소,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1. (현행과 같음) 2. -----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신 설〉	제14조의2(물품의 대부)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부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지원국장,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2. 물품관리관: 단가 50백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④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소방본부, 직속기관·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1. 본청
가. 행정부지사-단가1억원 (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지원국장-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지원국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과장-단가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방본부, 직속기관·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가.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국장-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주무과장-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주무국장: 단가 2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라. 회계주무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경주시 고시 제2021 - 71호

경주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경주시 황성동 일원의 황성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

경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간시설인 공원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근린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황성공원	근린공원	황성동	895,373	-	895,373	건고제173호 (79.5.19)	구역변경 없음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

시 설 명	기 정 면 적 (㎡)			변 경 면 적 (㎡)			비 고
	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계	895,373	28,776.79	54,549.18	895,373	28,994.79	54,767.18	건축 및 연면적: 증) 218㎡
도로 및 광장	114,908	-	-	114,908	-	-	
휴양시설	-	36.00	36.00	-	36.00	36.00	
운동시설	144,647	17,472.36	24,828.23	144,647	17,472.36	24,828.23	
교양시설	51,417	9,421.83	27,134.95	52,965	9,639.83	27,352.95	부지면적 : 증) 1,548㎡ 건축 및 연면적: 증) 218㎡
편익시설	40,296	1,374.00	1,734.00	40,296	1,374.00	1,734.00	
유희시설	2,500	-	-	2,500	-	-	
관리시설	2,793	472.60	816.00	2,793	472.60	816.00	
기타시설 (녹지)	538,812	-	-	537,264	-	-	부지면적 : 감) 1,548㎡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계	황성근린공원	경주시 황성동	895,373	28,776.79	54,549.18	
변경	계	황성근린공원	경주시 황성동	895,373	28,994.79	54,767.18	건축 및 연면적: 증) 218㎡
1. 도로 및 광장							
기정		소계		114,908	-	-	
기정		도로	소계	80,488	-	-	
기정	-	도로	황성동 산1-1외 170필지	70,075	-	-	
기정	①	자전거도로	황성동 349-3외 109필지	10,413	-	-	
기정	-	광장	소계	34,420	-	-	
기정	②-1	광장(1)	황성동 1034일원	27,292	-	-	
기정	②-2	광장(2)	황성동 1013-2일원	3,670	-	-	
기정	②-3	광장(3)	황성동 1041-4일원	3,458	-	-	
2. 휴양시설							
기정		소계		-	36	36	
기정	-	노 인 정	황성동 산1-1일원	-	36	36	
3. 운동시설							
기정		소 계		144,647	17,472.36	24,828.23	
기정	㉑	종합운동장	황성동 산1-1일원	24,100	6,327	6,327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⑤	테니스장(1)	황성동 463-3일원	2,880	-	-	
기정	⑦	실내체육관	황성동 1022-1일원	21,000	9,149.42	15,461.67	
기정	⑧	롤러스케이트장	황성동 1037일원	4,850	135	135	
기정	⑨	씨 름 장	황성동 산1-1일원	4,680	1,154.07	2,181.78	
기정	⑩	게이트볼장	황성동 산1-1일원	3,776	-	-	
기정	⑫	축 구 장	황성동 1053-79일원	29,090	-	-	
기정	⑪-1	축구공원(F/P)(1)	황성동 1040-3일원	10,850	-	-	
기정	⑭	농 구 장	황성동 454일원	4,080	-	-	
기정	⑪-2	축구공원(F/P)(2)	황성동 1047-2일원	24,622	-	-	
기정	⑥	국궁체험장	황성동 415일원	14,719	706.87	722.78	
4. 교양시설							
기정		소 계		51,417	9,421.83	27,134.95	
변경		소 계		52,965	9,639.83	27,352.95	부지면적 : 증) 1,548㎡ 건축 및 연면적: 증) 218㎡
기정	⑮	도 서 관	황성동 산1-1일원	5,318	1,282.5	3,253.5	
기정	⑯	충 혼 탑	황성동 산1-1일원	2,820	-	-	
기정	⑰	김유신장군동상	황성동 산1-1일원	500	-	-	
기정	⑱	최시형선생동상	황성동 산1-1일원	940	-	-	
기정	⑲	청소년회관	황성동 1053-49일원	6,100	1,485.03	2,997.59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㉖	임란의사 추모비	황성동 1053-78일원	445	-	-	
기정	㉕	박무 의공비	황성동 산1-1일원	47	-	-	
기정	㉘	문학비 시설지	황성동 산1-1일원	923	-	-	
기정	㉗	기념비 시설지	황성동 산1-1일원	740	-	-	
기정	⑬	문화예술 회관	황성동 988일원	28,100	6,276.3	20,463.86	
기정	㉙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황성동 352-7일원	363	-	-	
기정	㉚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황성동 934-1일원	3,139	-	-	
변경	㉚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황성동 934-1일원	4,687	218	218	부지면적 : 증) 1,548㎡ 건축 및 연면적: 증) 218㎡
기정	㉛	기상관측 시설	황성동 957 일원	163	-	-	
기정	㉜	6.25 및 월남전 참전 명예선양비	황성동 370 일원	104	-	-	
기정	㉝	박혁거세 동상	황성동 967-1 일원	130	-	-	
기정	㉒	아이사랑 책놀이터	황성동 370 일원	1,585	378	420	동사무소에서 명칭변경
5. 편익시설							
기정		소 계		40,296	1,374.00	1,7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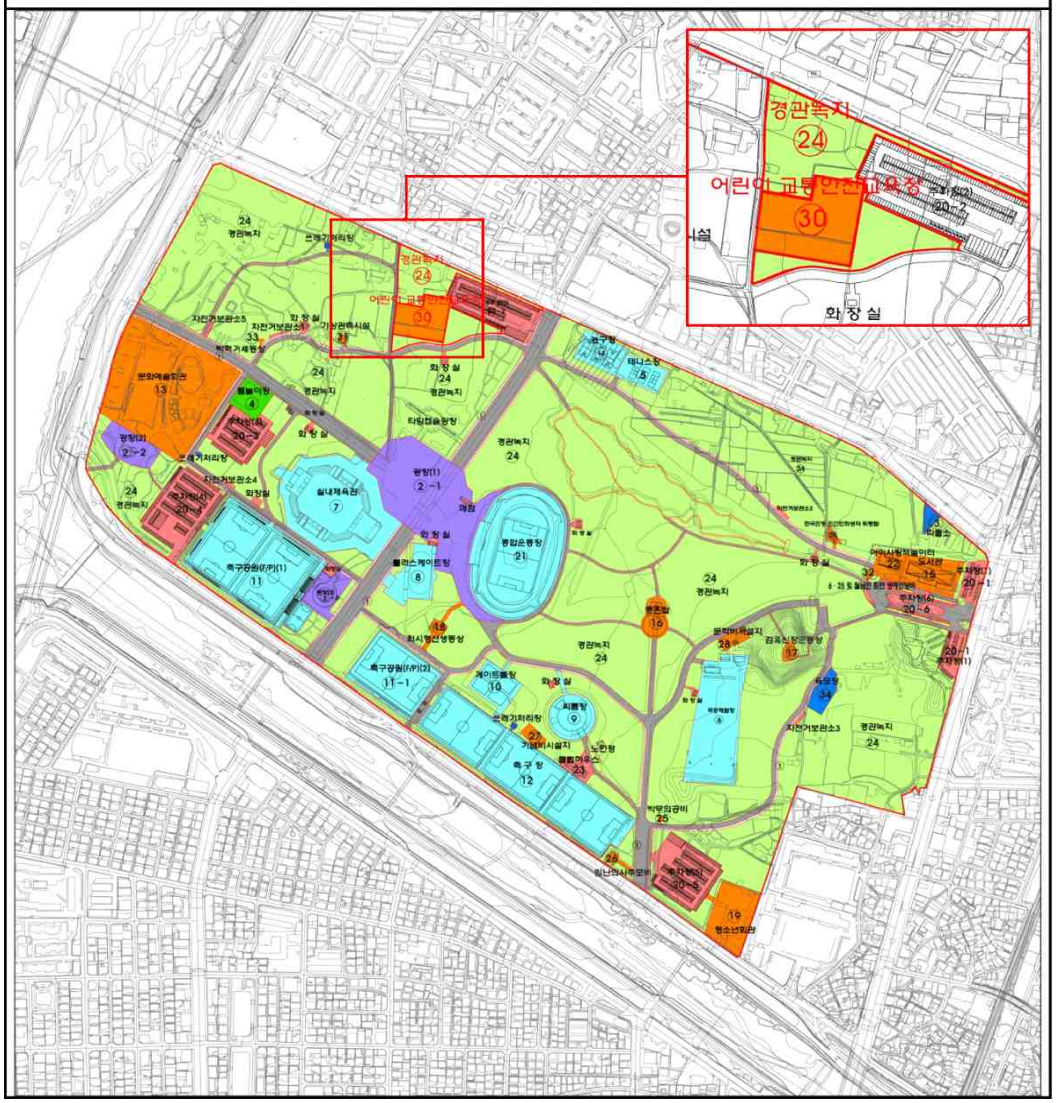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 면적 (㎡)	건축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⑳-1	주차장(1)	황성동 산1-1일원	3,512	-	-	
기정	⑳-2	주차장(2)	황성동 433-1일원	6,815	-	-	
기정	⑳-3	주차장(3)	황성동 965-2일원	5,483	-	-	
기정	⑳-4	주차장(4)	황성동 1048-1일원	9,120	-	-	
기정	⑳-5	주차장(5)	황성동 1053-49일원	7,707	-	-	
기정	⑳-6	주차장(6)	황성동 369-3일원	1,876	-	-	
기정	-	공중변소 (10동)	황성동 산1-1일원	2,126	914	914	
기정	-	매점(1동)	황성동 산1-1	500	100	100	
기정	㉓	클럽 하우스	황성동 산1-1일원	2,536	360	720	
기정	-	자전거 보관소1	황성동 985일원	124	-	-	
기정	-	자전거 보관소2	황성동 350-4일원	121	-	-	
기정	-	자전거 보관소3	황성동 404일원	121	-	-	
기정	-	자전거 보관소4	황성동 1011-3	112	-	-	
기정	-	자전거 보관소5	황성동 990-4	143	-	-	
6. 유희시설							
기정	④	물놀이장	황성동 966-1일원	2,500	-	-	
7. 관리시설							
기정		소계		2,793	472.6	816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	쓰레기처리장	황성동 산1-1일원	313	–	–	
기정	③	파 출 소	황성동 362-7	727	122.6	116	
기정	㉞	육 묘 장	황성동 385일원	1,753	350	700	
8. 기타시설							
기정	㉔	경관녹지	전지역	538,812	–	–	
변경	㉔	경관녹지	전지역	537,264	–	–	부지면적 : 감) 1,548㎡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도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4. 기타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054-779-6423) 및 교통행정과(☏ 054-760-2968)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 경주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조성사업 –



경주 도시관리계획 황성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범 례	
	도 로	
	광 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유희시설	
	기타시설(녹지)	
공원조성계획도(변경)		N W E S

영주시 고시 제2021 - 36호

영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가흥동 347-3번지 일원에 “한절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4. 1.

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것으로 방재시설(유수지)을 결정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피해 등의 재해방지를 하고자 함.

○ 또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한1	한절 유수지	저류시설	영주시 가흥동 347-3번지 일원	-	증) 1,055	1,055	-	

2)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한1	한절 유수지	• 유수지 신설 A = 1,055㎡ 증) 1,055㎡	• 한절마지구의 상습침수에 대비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련 도서는 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고시 제2021 - 23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

영 천 시 장

도면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경유지	지정(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1	호국로(남측)	대로1-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조교동 693-2	조교동 695-4	0.20	2.0	현풍닭칼국수	신설
2	하이브리드로(동측)	대로3-8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봉동607-4	괴연동492-5	3.30	1.5	봉촌지	신설
3	하이브리드로(서측)	대로3-8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봉동607-4	괴연동492-5	3.30	1.5	봉촌지	신설

도면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4	자호천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영천시청	임고강변공원	임고면 삼매리365-26	0.84	3.0	임고면 덕연리 125-1	신설
5	운주산 휴양림로	-	자전거전용차로	영천시청	운주산휴양림정상	임고삼매리 365-18	1.70	2.5	도래사	신설
6	운주산 휴양림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영천시청	운주산 휴양림	운주산 전망대	2.10	2.5	산림문화 휴양관	신설
7	운주로(남측)	소로2-20	자전거전용도로	영천시청	양수교	임고면 황강리243-5	1.60	3.0	양평리 돌빼기 정류장	신설
8	완산로(동측)	대로1-1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영천역광장	문외동 317	1.10	1.5	영천공설시장	신설
9	완산로(서측)	대로1-1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영천역 광장	문외동 317	1.10	1.5	영천공설시장	신설
10	영화로(동측)	대로1-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조교동 740-1	조교동 695-4	0.65	3.0	다이소 영천 동부점	신설
11	영천아이시로(동측)	대로1-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작산동282-2	영천IC	1.27	1.5	진각사	신설

도면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12	영천아이시로(서측)	대로1-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작산동282-2	영천IC	1.27	1.5	진각사	신설
13	언하공단로(남측)	대로3-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언하동431	망정동421-1	0.57	1.5	갑을공단(화신앞)정류장	신설
14	언하공단로(북측)	대로3-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언하동431	망정동421-1	0.57	1.5	갑을공단(화신앞)정류장	신설
15	새천년공원길(서측)	중로2-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망정동416-4	망정동28-2	0.43	2.5	우로지생태공원	신설
16	사일로(동측)	중로1-2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성천리470-1	교대리116-39	1.10	2.0	농산물원종장영천포장	신설
17	사일로(서측)	중로1-2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성천리470-1	교대리116-39	1.10	2.0	농산물원종장영천포장	신설
18	자호천제방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영천시청	단포교S	양수교S	4.60	3.0	자호천교	신설

도면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19	금호강 영천	-	자전거전용도로	영천시청	금호읍 덕성리278	금호읍 덕성리304-1	0.15	2.5	금호강	신설
20	금호강 영천	-	자전거전용도로	영천시청	성내동 169-1	조교동 877-3	3.70	2.0	금호강	신설
21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영천시청	금호교회앞	금호읍 관정리676	2.10	4.5	금호강	신설
22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금호읍 관정리676	금호읍 황정리745-2	1.60	3.0	금호강	신설
23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금호읍황정리745-2	도동 739-28	2.46	2.0	금호강	신설
24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영천시청	금호읍 덕성리243-3	금창교	0.68	4.0	금호강	신설
25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영천시청	금창교	금호읍 어은리산49-5	2.50	3.0	금호강	신설
26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금호읍 신대리737-51	금호읍 덕성리243-3	1.10	3.0	금호강	신설

도면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경유지	지정(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27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	영천시청	금노동683-4	금노동683	0.87	5.0	금호강	신설
28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	영천시청	완산동1269-1	조교동63-4	1.70	4.5	금호강	신설
29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영천시청	도동619-1	금노동683-4	2.60	3.5	금호강	신설
30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영천시청	금노동 683	완산동 1269-1	2.70	3.0	금호강	신설
31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영천시청	조교동63-4	단포교	1.80	3.0	금호강	신설
32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영천시청	조교동 60-3	조교동 63-3	0.30	2.0	금호강	신설
33	금호강 영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영천시청	금호읍 덕성리276	금호교회앞	2.10	3.0	금호강	신설

도면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경유지	지정(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34	포은로(남측)	소로2-6	자전거전용도로	영천시청	임고면 삼매리365-18	삼매리 1245-3	0.93	3.5	영천호	신설
35	포은로(동측)	소로2-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영천시청	삼매리 1245-3	삼매리 산39-2	0.11	2.5	영천호	신설
36	포은로(동측)	소로2-6	전용차로	영천시청	삼매리산39-2	성곡리산7	0.66	3.0	영천호	신설
37	포은로(동측)	소로2-6	자전거전용도로	영천시청	영천댐	영천댐둑	0.10	3.0	영천호	신설
38	포은로(동측)	소로2-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자양면 성곡리산7	자양면 성곡리산7	0.06	3.0	영천호	신설
39	포은로(북측)	소로2-6	자전거전용도로	영천시청	자양면 성곡리산7	자양면 성곡리 산4-5	0.31	3.0	영천호	신설
40	포은로(북측)	소로2-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자양면 성곡리산4-5	자양면 성곡리 산4-5	0.14	2.0	영천호	신설
41	포은로(남측)	소로2-6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	영천시청	자양면 용화리467-1	자양면 용화리 산130-1	0.06	2.5	영천호	신설

도면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경유지	지정(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42	포은로(남측)	소로2-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자양면용화리산130-1	자양면 성곡리 산73-2	2.30	2.5	영천호	신설
43	포은로(동측)	소로2-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자양면성곡리산4-5	자양면 용화리467-1	1.20	2.0	영천호	신설
44	포은로(남측)	소로2-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영천시청	자양면 성곡리 산117-14	자양면 성곡리427	0.26	2.5	영천호	신설

◈◈◈

경산시 공고 제2021 - 620호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산 시 장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내역

구 분	내 용
사업 시행지	경산시 중산동 696번지일원
사업 시설명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원, 공공공지) ○ 명칭 : 대로2-11호선, 중로 2-36、38호선, 소로2-296호선, 소로3-398호선, 광로3-1호선, 중로1-20호선, 중산1소공원, 정평중산지구 공공공지

구 분	내 용
사업의 규모	○ 도로 : A = 7,979.9㎡ - 대로 2-11호선 : L = 203m, B = 우0~3.6m(인도확장) - 중로 2-36호선 : L = 80m, B = 15m - 중로 2-38호선 : L = 324m, B = 15m - 소로 2-296호선 : L = 128m, B = 8m - 소로 3-398호선 : L = 18m, B = 3~7m (보행자 전용도로) - 광로 3-1호선 : L = 160m, B = 0~0.5m (확장) - 중로 1-20호선 : L = 27m, B = 5m (접속도로)
사업의 규모	○ 공원 - 중산1소공원 : A = 682.5㎡ ○ 공공공지 - 정평중산지구 공공공지 : A = 1,152.4㎡
사업 시행자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43, 4층(옥산동) ○ 성명 : 중산 메트로폴리스 지역주택조합 대표 노병석
사업의 기간	2018. 5. 30. ~ 2021. 3. 29.
관련인가 등	경산시 인가 제2017-35호(2017. 9. 19.) 경산시 인가 제2018- 8호(2018. 4. 9.) 경산시 인가 제2019-22호(2019. 9. 5.) 경산시 인가 제2020- 4호(2020. 3. 2.) 경산시 인가 제2021- 4호(2021. 3. 1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 - 1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 4.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SK브로드밴드(주)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1 3층(삼덕동2가)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정동 6-11번지 외 1필지 일원 면적 : 0.18㎡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통신전주 설치 시설개요 : 통신전주 2본
점용 기간	2021년 3월 15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